



#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

*Vote for a Social economy*

##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정의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녹색당



## 목 차

개회사	3
발표문	
1. 19대 국회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평가와 20대 국회 과제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5
2.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이병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3
■ 20대 국회의 3대 약속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국회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19
- 보육 분야	
- 교육 분야	
- 청년 분야	
- 보건의료 분야	
- 돌봄 분야	
-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 지역활성화 분야	
토론문	



## 진행순서

2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

사 회 : 서종식,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

인사말      개회사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축    사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발표 및  
토론

사회 : 유영우, 연대회의 공동대표/논골신희 이사장

발 표    ‘19대 국회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평가와 20대 국회 과제’

1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발 표    ‘4.13 총선 사회적경제 민간대표 공동공약 요구안 ’

2        이병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토    론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정리 및 폐회



## 인사말

임종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4.13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신계륜의원님, 정의당 박원석의원님,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유영우 연대회의 공동대표님, 발표를 맡아주실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님, 이병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님, 토론을 맡아주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님,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님,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유가로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대기업 주도의 수출정책을 펴왔던 우리 경제도 활력을 잃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 양극화도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저성장에서 제로 성장사회로, 또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첩첩 산중과도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내재한 협동 DNA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고비에서 보듯 우리사회가 재도약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경제불황 속에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활동영역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난 국회때 사회경제기본법 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4.13 총선은 한국사회 변화의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육아, 보건의료, 복지, 교육, 청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별하여 발표를 드립니다. 유권자들에게 사회적경제에 투표해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통해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공고히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회적경제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여야 모두에서 많이 뽑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뽑혀진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 19대 국회 평가와 20대 국회의 과제

## - 사회적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발전시켜야

김기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1. 들어가며

정치는 국민의 삶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어 큰 틀의 합의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 필요한 자원을 정렬하며, 사회경제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입법취지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며, 사회경제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여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진다.

19대 국회를 평가할 때는 평가의 목적과 관점, 범위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지만,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는 1)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정비를 위한 입법 활동, 2)사회적경제의 의제화 활동, 3)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촉진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입법활동은 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미비한 법의 정비 및 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부의 활발한 활동이 전제된 상황에서 견제기능보다는 촉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의제화 활동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위치에 따라 적극적인 촉과 적대적인 촉으로 나눠 정파적 이해에 따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였다.

19대 국회의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가 국회 내에서 모든 정당 혹은 정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큰 틀의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국가적 의제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하위 의제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19대 국회의 한계를 정리한 후 20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 2. 사회적경제관련 입법 동향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본법 협동조합과 관련한 입법동향만 정리하였다. 국회의안시스템의 의안 중에서 폐기된 것이나 철회된 법안은 제외하고, 수정가결, 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로 반영된 법안만 정리하였고, 아직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개별법 협동조합 중에서도 기본법 협동조합과 명시적으로 연관 관계에 있는 법안의 개정은 포함하였다.

20대 국회를 통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은 전체 22개의 개정법률안이 법개정에 반영되었고, 사회적기업은 10개의 법안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대안으로 반영되어 합산하여 정리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은 3개의 법안이 제기되어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 개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은 높은 관심과 국회 협동조합포럼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민간의 의견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2012년 12월 시행된 후 매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기본법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회원사로 가입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협동조합의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분류	번호	제안일	의결일	반영 방식	법령
사회적기업	1	15-10-01	15-12-09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15-09-02	15-12-09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13-11-15	13-12-31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	13-03-11	14-01-01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	13-09-30	14-01-01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	13-01-01	13-01-01	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	12-09-28	13-01-01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15-09-30	15-12-28	수정가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12-11-15	13-12-31	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	12-07-13	13-01-01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번호	제안일	의결일	반영 방식	법령
협 동 조 합 기 본 법	1	15-11-11	16-02-04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4-08-25	14-12-09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14-08-	14-12-09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14-06-24	14-12-09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13-10-30	13-12-26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12-11-23	13-12-26	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13-08-27	15-12-31	수정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13-10-10	15-01-12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12-11-29	13-12-31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12-11-07	13-01-01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12-12-31	13-01-01	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13-05-24	14-12-09	대안반영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15-10-23	16-01-08	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14-03-03	15-05-29	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13-09-30	15-02-16	수정가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13-09-30	15-01-12	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12-12-07	14-02-28	대안반영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13-09-30	14-02-20	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13-09-30	14-02-20	원안가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12-12-07	13-06-25	원안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기본법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 지방세 특례제한제도의 도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지역자활센터의 법인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추가), 영유아보육법 개정(공동육아협동조합의 추가), 협동연구개발촉진법(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지원 허용, 과학기술협동조합 촉진) 등의 다양한 관련법률의 개정이 이뤄진 것은 국회의 활동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본법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입법활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8개의 법안은 주로 세제와 관련된 혜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법에는 허가요건을 완화해주는 반대급부로 사회적기업 등의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인정하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마을기업에 대한 입법도 1건이 제안되기는 했지만, 아직 의결되지 않아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은 없었으며, 초광역자활기업을 협동조합

으로 설립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개발 등 정책 및 사업 차원의 활동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3개 당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19대 국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전반기에는 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상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입법활동이 활발하였으며, 기본법 협동조합이 다양한 업종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발생한 인가, 사업 허가, 정책지원 대상 등의 법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비슷한 성격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법 협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법개정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법 협동조합에 필요한 관련법률의 개정 수요는 표면에 떠 오른 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될 예정이므로 20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경제 의제화 활동

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모임, 포럼 등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 필요성, 국회의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18대 국회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13년 5월 1일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이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김태년, 김영환, 유승희, 윤관식, 은수미, 전순옥, 김현 의원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은 이후 관련 국회의원들의 현장 견학, 연수,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비슷한 2013년 5월 7일에는 협동조합활성화포럼이 창립하였다. 김기준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과 민간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이 포럼은 매년 4~5회 이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입법과제의 발굴, 역할을 나눠 실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각 정당별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법안으로 발의하는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새누리당은 2013년 12월말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내대표인 유승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홍일표, 김세연, 이종훈, 이이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상반기 동안 거의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67명의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게 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를 운영하는 취지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새누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고, 개인 창업의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달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후 4월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제출하며 제안이유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2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민간지도자까지 포괄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14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6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제안이유로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효과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하고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 지수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복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의 의의에 주목하고, 의원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야간의 공동활동의 수준도 높아졌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정당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선언을 함께 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더욱 증대하였다. 이후 여야대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 표명, 2015년 초의 당정협약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은 사회적경제가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한 의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2015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런 국회의 사회적경제의 중요 의제화는 크게 변동하게 된다.

상임위 소위에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심의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점차 깊어지더니 7월 유승민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 새누리당의 스탠스는 사회적경제를 마치 '사회주의 경제'와 연계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주게 되었다.

보수단체가 주도한 한 토론회에서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소원을 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 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조달을 해주는 건 배급제다”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확대되게 된다.

이후 한국경제신문의 좀비 협동조합 기사 이후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는 물론 협동조합 전반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 오히려 사회적경제라는 의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제는 저성장 기조 속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의 사회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2015년 하반기 이전에는 여야 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중요 의제로 부각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적경제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정략 속에서 당내 정파투쟁에 동원되는 하위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고, 보수우파 진영의 아젠다 세팅에 적절하게 합리적 보수와 야당이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중요 의제로 부상하려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의 의제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회경제의 문제점이 해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의제화와 제도적 반영은 계속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의제화에 대한 각당의 전략이 더욱 세련되고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의 견제 및 촉진

국회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견제 및 촉진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주로 이뤄진다.

국가적 의제와 관련된 질의나 요구사항과 달리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평가 견제 및 촉진 등의 활동은 대부분 예산이나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그 결과 협동조합보다 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의 견제 및 촉진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금의 부당 사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지원만료 후의 사회적기업의 사업위축 등을 둘러싼 논의에 한정되어 전반적인 19대 평가의 영역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촉진을 위한 질의나 감사 내용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1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서 제시되는 정책감사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총체적인 분석에 기반한 종합적인 정책질의 및 정책감사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일상적으로 이뤄나가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5. 20대 국회의 과제

19대 국회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전반기의 획기적인 발전에 불구하고 하반기의 정치적 구조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저해요인을 넘어서지 못해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큰 성과를 남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20대 국회는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그에 적합한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논의가 되다 중단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위축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경제의 저성장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체계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수경제의 전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양극화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자원을 최대한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양극화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둘째, 초당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의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당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파적인 편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국가적 의제로 정비하는 데 정당 내부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진영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19대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에 다양한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참여하여 시장경제와 함께 공생발전하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정비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실행된다면 사회적경제의 환경적 저해요인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의 확대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에 대하여

이병학(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어, 총선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또한 공천지분확보 등 계파이해관계나 선거구도와 같은 정치공학에 주요 관심을 쏟고 있어 이슈와 정책이 실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각 정당은 ‘일자리더하기 1탄’(새누리당), ‘3대비전-7대약속’(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5대기득권 해체’ 등 정책의 큰 줄기만 발표했을 뿐 아직 세부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황임.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13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내 초당적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③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7개 분야의 정책과제’<sup>1)</sup>를 제출하여, 각 정당 및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연대회의는 정책요구안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에서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1) 요구안은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20대 국회의 3대 약속

1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격상
- 행정칸막이 해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2

## 국회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

-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의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운영
-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 등 관련 제도 정비,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논의

3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기금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고용·노동 환경 기반 마련

**1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기금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자본시장의 현황만으로는 금융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반영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에서의 정착과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초기 정책기금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 금융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금융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제사업은 자립기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경우 최근 공제사업의 근거규정의 신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금을 통한 지지기반 마련 필요
  -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자립적 활동이라는 기본원칙과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닌 공제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 지원의 차원으로 접근 필요

**2 사회적경제조직 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해당 조직 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에도 협력·협업을 통해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합조직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기본법」 및 기존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연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필요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협업을 위한 연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개방적인 규정 필요
-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조직의 유의성에 비추어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합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등에 근거규정 필요

### 3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익지향성, 비영리지향성, 상호자 조성 등에 기반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한정되어 「민법」상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므로 지정기부금 범위를 필요성에 기초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취약계층고용형 및 기타 공익증진형까지 확대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률에 따른 개별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법인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성에 기초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당기순이익과세 인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유사한 수준의 세액감면제도 인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과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근로종사자인 조합원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한 출자금도 성격상 우리사주 또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볼 것이므로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 타당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사업조직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기업을 기초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조직의 특수성과 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영리인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조직의 특수성과 정책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필요

##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유용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와 공유재산 등의 이용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및 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필요
- 특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에 공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필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필요
- 「사회적가치법」, 「사회책임공공조달법」,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이른바 사회적책임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적극적 검토 필요
-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영 필요

## 5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고용·노동 환경 기반 마련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형태가 협동노동에 기반하여 경영과 소유 및 근로가 합성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업과 산업안정 등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형성 및 노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협동조합 등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신설 필요
- 노동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장” 규정 또는 「노동자협동조합법」 등의 개별적 제정 필요

1

## 공동체육아로 공동체사회를 가정 - 공동체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육아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써 국가와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는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각 가정은 스스로 양육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20여 년 동안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며, 육아의 협동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도 증명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육아부터 초등기까지의 아동돌봄을 부모와 교사의 협동으로 이뤄낸다면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성의 파괴가 심화되는 현재 사회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부모참여를 비롯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아이와 교사 부모의 인권을 실현하는 보육과 열린어린이집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일이다. 육아 돌봄공동체, 협동어린이집,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사회적경제가 바뀌갈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 ▣ 중점 과제

#### 1.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

- ①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
- ②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가 운영

#### 2.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

- ①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지원
- ②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③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3. 학교밖 방과후를 활성화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공동체 돌봄의 실현
- ①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방과후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② 협동조합 방과후의 법제도화
  - ③ 지역사회 내 초등방과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밖 방과후클럽 활성화

▣ 과제별 해설

1)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

-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충하여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새로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재정계획 수립시 보육과 육아지원예산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함.
-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출산과 양육자체를 중앙정부가 안정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해야 함.

2)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

“아이를 기르는 일부터 공동체성을 높일 때 이 사회의 공동체성은 커져간다.”

- 고립육아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활성화
  - 가정양육의 고립성과 힘겨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내 가정양육자들의 공동체모임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마련 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책이 확산되고 지속되어야 함.
  -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지역)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과 같이 가정양육의 공동체문화 만들기를 확산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
  - 부모들 또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협동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유형)은 전체 어린이집의 0.3%밖에 되지 않음.
  - 협동어린이집은 부모가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 부모의 참여,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등 한국보육의 과제를 해결해온 중요한 성과임.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 공간 마련부터 교사 처우개선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음. 어린



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복수담임제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와 교사들의 안정적 돌봄 권리를 실현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왔음.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협동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협동어린이집의 확산과 더불어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의 공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저리용자 지원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여 졸업부모도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과 더불어 그것을 공동체보육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주체로서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함.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실행중. 이 사업을 여러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되어야 함.
-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은 두가지 유형으로 가능. 하나는 지자체와 지역내 보육관계자들, 그리고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별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교사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임.

### 3) 학교밖 방과후를 활성화한다. : 생애주기에 따른 공동체 돌봄의 실현

#### ○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의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

-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한 학교내의 초등돌봄교실은 양적으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운영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이번 누리과정정보조금문제와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재정도 위기에 처해 있음. 안정적인 재정 배분과 초등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생활을 마친 아이들의 쉼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함. 그러나 학교별로 한 두 개의 교실에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음. 초

등돌봄교실이 아이들의 자유롭고 즐거운 방과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함.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가 고려되어야 함. 아이들을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규정에 따라 교사 1인은 관리인원으로만 배치된 현실. 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서의 교실운동을 위해서 교사들의 쉼과 교사로서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교사인원을 증원해야 함.
  - 많은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초등돌봄교실 아이들이 학교공간을 다각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
-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과후에 대한 아이와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방과후의 법제도화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초등방과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밖 방과후클럽을 활성화해야 함.
- 현재 모범적으로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과후를 법제도화하여야 함.
  - 학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이후 학령기 아동의 자기성장과 다양한 활동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클럽이나 센터 등을 활성화해야 함.

2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우리의 교육은 협동을 급훈 등으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바로 옆의 친구마저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다. 저성장 시대, 미래 세대의 자산은 협동하는 힘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삶에 노동, 나눔, 공동체, 절제의 의미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경제 교육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에서 나만이 아닌, 내 친구, 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협동의 가치와 방법을 익혀가는 사회적경제교육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방과후·돌봄·매점·식당 등 학교의 소비영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닌 주체적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 주체가 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와 교육의 만남은 지속가능한 상생의 삶을 지향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마을이 품은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협동 시민으로 커가고, 청년이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 중점 과제

1.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 ①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②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 ③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④ 지역밀착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2.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 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 ②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매점
- ③ 협동조합 방식의 대학 생활복지 강화

## ■ 과제별 해설

### 1.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 (1)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확대
  -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마을, 교육자치 등)를 연결하는 협업 체계 구축
  - 마을과 학교의 교육 연계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 적극 도입)
  - '학교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및 운영 지원 (방과 후교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창의체험활동 등 우선위탁)
- 마을 창의체험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의 가용 교육인프라를 체험학습으로 연결
  - 마을 여행 및 마을교재 개발(예. 성동구 마을교재, 성북구 마을여행 개발)

#### (2)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 초중등 교육과정, 사회·경제 등 교과에 사회적경제관련 내용 반영
  - 사회적 경제의 가치인 협동과 연대, 호혜와 상생 등의 가치는 미래세대의 인격형성과정에 협동적 사회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활동·경제활동의 주체적 역량 함양
- 청소년 사회적경제지역교과서 개발
  - 사회적경제지역교과서 개발(예. 서울시 사회적경제교과서 개발, 아산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재, 용인 청소년 사회적경제워크북 개발, 구로구 <사회적 경제, 참 좋다> 등)
  - 교과활동(교육 내용 재구성),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 범교과서 학습 주제(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 자유학기제 등에서 활용

### (3)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사회적경제방식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적경제방식의 지역변화프로젝트 활성화
  -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및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 제도적 보장
-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학교
  -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자율학교(예. 의정부 꿈이룸 학교)

### (4) 지역밀착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 사회적경제 전문대학·대학원 지정해 지역 사회적경제전문인력 양성  
(예. 경남과기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정부의 창업보육전문대학 등)
  - 사회적경제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입
-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회적경제교과목 신설
  - 지역공무원의 사회적경제이해도 제고 및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실무' 과정 개설 등 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 2.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 (1)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 마을이 기반이 된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학부모, 방과후강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지역기반 방과후·돌봄 협동조합 지원법 마련 및 제도 개선
- 마을 방과후 강사 및 현장체험학습 강사 양성
  - 마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방과후 강사 양성

(2)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매점

- 학교협동조합 매점 확산
  - 불량식품, 빵셔틀을 방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방식의 매점 확산
  - 학교협동조합 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회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학교협동조합 매점 운영지원
  - 혁신교육지구 등 지역 단위 교육정책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 임대료 및 공증 문제 개선

(3) 협동조합 방식의 대학 생활복지 강화

- 대학생협(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제도 강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생협 운영안정화: 학교 현장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설
  - 교육부 대학평가 기준에 '협동조합' 관련 항목을 신설
  - 대학생협 조합원에게 제공, 공급하는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생협 임대료 문제 해결
- 주택협동조합 기숙사 통한 주거문제 해결
  - 협동조합 방식의 기숙사 설립 통한 기숙사비 및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지원  
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 관련 공약

### 1.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 배우기

\* 『2014 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자료집』 p.100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 적극 도입
-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마을학교' 설립
- 지역사회의 가용 교육인프라를 체험학습으로 연결
- 마을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활동 경험, 다양한 형태의 직업체험, 지역사회활동 참여
- 청소년 이용시설 대폭 확충
- 봉사, 체험, 노동, 취미, 스포츠 등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개발
- 마을 교육 함양을 위한 지역 인프라 및 자원봉사, 재능기부 네트워크화
- 마을학교와 학생을 연결해주고 이들을 돌봐줄 마을선생님 양성
-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협업 도모
- 마을학교 운영에 인센티브 제공

\* 『새누리 2012 19대 총선 중앙공약』 pp.14~15

<111프로그램(1인 1악기 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 전국 초등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한국형 '엘 시스템'(음악을 통해 아동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오케스트라)를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
- 학생주도의 동아리·봉사활동 활성화 및 적극 지원
-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전국 초 중 고교생 토요일문화학교 지원>

- 초·중·고에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사진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파견 운영
-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하여, 토요일 창의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5일 수업제 연계 폐교시설 활용,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확대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72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겠다.?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 교육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165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소년 자치 조직이 지역의 교육조례 제정의 의사결정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조례 제정, 교육예산 심의 등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반드시 지역별 청소년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p.46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학습부진 학생 기초학력 보장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 운영, 온라인 보충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마련
- 지역 내 학교 체육·예술 교육 지원 확대
- 학업중단 학생 대상 「희망손잡기 프로젝트」 지원
  - 학업중단 전·후 학습, 취업 등 정보제공, 검정고시 정보 제공 및 무료 강좌 개설 등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p.47

<일반 고등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추진
  - 필수 이수 단위 축소, 학교 자율과정 이수 범위 확대,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범위 확대 등
- 일반고 학생 개인이 원하는 진로 집중과정 선택 및 직업교육 확대 추진

\* 『민주당 19대 총선공약자료집』 p.151

<중·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교육 확대>

-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찾아나서는 진로직업체험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

\* 『민주당 19대 총선공약자료집』 p.191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 청소년의 학교 외 수련활동, 문화활동,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존’ 지원 확대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국립예술시설 등 문화예술시설의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 교과부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체험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육청, 각급학교,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기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개발 지원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청소년참여기구와의 교류 확대
-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참여단 구성·운영 확대



## 2.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72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돌봄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146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확충
- 당사자 복지를 통한 복지공급 다양화
- 지역사회 자원들이 단절되지 않는 서비스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새누리 2012 19대총선 중앙공약』 p.16

(1)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차상위계층 40%,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100%, 월 6만원 지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1천개→3천개)
-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관련 예산 반영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

\* 『민주당 19대 총선공약자료집』 p.190

-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교실을 확대 설치, 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및 운영비 지원 (2013년부터 매년 400개씩 총 2,000개 확대)
  - 방과후 돌봄교실은 학교수요에 따라 1교 1실을 2~3개로 증설
  - 주5일 수업에 따른 맞벌이 저소득층계층의 '나홀로 자녀'를 위해 토요 돌봄교실 확대 운영
- 엄마 현장체험교사를 채용하여 엄마표 이동수업 운영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체험활동 교육 강화를 위해 일하고 싶은 엄마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채용하여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연, 도서관 등을 다니며 놀이와 체험교육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내 아이도 함께 키우며 일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별, 독립된 '어린이센터' 설치로 주택 가까이의 공간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 제공(2013년부터 매년 200개씩 총 1,000개 설치, 500개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신규 설치)
  -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사회복지 내실화를 추진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족의 복지지원체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체제 연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72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강화하겠다>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협동 교육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확대(공증, 수의계약시 임대관련)
- 교육부 내 학교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전문직의 신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 보고서』 p.15

<도농상생-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푸드플랜 전국 확대>

- 공공기관 전체로 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
  - 복지시설, 학교, 병원, 군대 등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한 모든 공공기관에 급식을 제공하고 지원함
  - 현재 중학교까지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함

\* 『민주당 19대 총선공약자료집』 p.143

- 2013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고등학교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 식재료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 지자체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 부담
    - ※ 총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 비용의 50%를 부담하되,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 ※ 지방정부 부담분은 지방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
  - 19대 국회에서「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등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보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72

<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 대학생협 조합원에게 제공, 공급하는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교육부 대학평가 기준에 '협동조합' 관련 항목을 신설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생협 운영안정화: 학교 현장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 보고서』 p.3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제공>

-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1가구 3실 기준, 1가구 2억 원 가정)를

매입하여,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을 준비하여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함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p.53

<2030 세대의 주거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으로 확산,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 행복(공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확대
  - 2030 세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특례 적용 시한 연장



**3**

**사회적경제로 청년에게 힘을 주는 사회 만들기**

누구에게나 좋은 일자리와 적당한 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한 번 안정적 소득을 누리본 적도 없이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주거환경을 포기하지 않고도 청년 스스로 비용을 내는 것이 가능한 청년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이 사회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창업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중점 과제

1. 청년주거,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임대계약 맺기

- ① 사회적경제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년 공공 임대사업 실시
- ②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청년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대안주택 도입

2. 협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 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통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②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③ 지역인재 펠로우십 운영과 거점 공간 조성

3.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①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② 대학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협력 강화

▣ 과제별 해설

1. 청년주거,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임대계약 맺기

(1) 사회적경제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년 공공 임대사업 실시

- 세어형 기숙사
  - 청년 1인가구를 위해 낡은 고시원 및 모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세어형 기숙사로 활용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민간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 대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사회주택 공급
- 대학생 희망하우징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입물량의 일정량을 공급, 저렴한 임대료 책정(시세 30% 이하)으로 부담 경감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6년간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거주 공간 제공, 세대융합형 룸세어링사업 참여 가구에 환경개선 공사 지원
- 자치단체 청년맞춤형 공공주택
  - 매입임대주택의 일정 물량(30% 이내)을 활용하여,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2)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청년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대안주택 도입

- 대안적인 주택 만들기
  - 청년시민 스스로 지불가능한 대안적인 주택
  - 공공체성이 강한 대안적인 주택
  - 자치단체 협력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택
- 대안주택의 제도적 운용
  - 자치단체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 자치단체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안주택 사례
  -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 공공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 빈집 리모델링

## 2. 협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 (1)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통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분야 청년혁신활동가

사업대상: 만19세 ~ 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최대 23개월, 사회적경제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

#### ○ 사회적경제 디딤돌 일자리 경험 제공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 경험 기회 제공
- 전문지식, 업무스킬, 직무소양, 네트워크 등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역량 향상
- 최소 2년 이상 역량 향상 기간 제공 후 사회적경제 영역 취업 및 창업 연계

### (2)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 사회적경제 중심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조합원: 경상북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및 후원자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공공구매+중앙정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기업 지원 제도+대기업 CSR의 종합적 연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 사회적경제 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 사회적경제 “좋은 일자리 기준” 만들기 \*ILO 'Decent Work' 기준 도입

### (3) 지역인재 펠로우십 조성 및 거점 공간 조성

- ‘지역인재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인재 육성
  - 생활비와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여 외지로 갔던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
  - ‘청년 거점 공간’과 함께 지역사회와 청년의 접점을 만드는 유인동기로 활용
- 청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청년 거점 공간’ 구축
  -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형 청년단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형 청년단체, 마을살이를 위한 공동체형 청년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구축
  - 청년단체, 청년인재,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의 협업 공간(Co-working space)으로 활용
  -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집중하는 공간거점으로 활용

### 3.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1)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청년들의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취업 및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실전 근무 경험 내지 인턴십 제공 확대
  -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를 묶어줄 수 있는 모듬 스터디 및 프리랜서 협동조합화 지원
  - 기업 CSR 및 엔젤투자자와 청년 사회적경제창업자간의 정보네트워크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 학교에서 지역 사회 사회적경제일터로의 이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 (지역별 사회적경제분야 인재 등록 및 관리)

#### (3) 대학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협력 강화

-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연계 R&D 강화
  -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싱크탱크로서의 대학연구력 강화
  -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 기금 지원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의 연계
- 민관학 사회적 경제 협의회 구축(Private-Public-People-Partnership)
  - 대학, 정부부처, 지역교육청 등 교육위원회, 지방정부, 경영자연협회, 사회적경제 당사자 네트워크, 노동시장 및 청년 관련 조직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관련 공약

### 3.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p.77

<지역밀착형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전국 4개 지역에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험·분석 장비 구축
  - 구축된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등 뿌리기업 밀착 지원

\*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120

<지역사회전문가 및 생활기술자 직업학교' 설립>

- 농촌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기획, 관리, 운영할 '청장년 지역사회전문가(디자이너) 및 생활 기술자' 발굴·육성하는 교육(학교)사업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모델 개발할 것이다.
- 귀농촌 지원조례(20015년 7월 21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와 연계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할 것이다. (예: △농업경영 등 교육훈련 지원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귀농촌 지원센터 설치 △일자리, 농지, 정책지원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p.52

<청년의 꿈이 일터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대학생 일자리 대폭 지원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실효성 높아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 강화
  - 매년 1천 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 신·기보 보증 지원 및 본인 연대 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 우드펀딩 제도」 조기 도입
  - 고졸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희망통장」 제도 도입 (비과세 세제혜택 부여,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중소기업 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
  - 벤처기업 실전 근무 경험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생애주기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도전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 청년 창업 기반 확충 방안
  -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인프라 확대
- 소프트웨어·콘텐츠·앱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팀 육성 지원 인프라 확대

-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무공간·경영 지원 인프라 확대
  -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및 운영지원 확대
  -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재기교육, 기업회생, 신용회복, 재창업자금 등 연계 지원

\*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도록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 산업단지에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시설을 한꺼번에 개선하여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 산업단지에 편의시설, 산재예방시설, 어린이집, 문화 공간, 지역맞춤형 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새누리 2012 19대총선 중앙공약』 p.1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 '벤처기업 M&A거래소(가칭)' 구축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입
- 창업실패 낙인 제거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 『새누리 2012 19대총선 중앙공약』 p.2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 『새누리 2012 19대총선 중앙공약』 p.3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제도' 도입>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4

**건강의 평생친구, 주치의 제도**

**평생주치의로 건강한 삶, 행복한 마을**

작년에 발생한 메르스사태는 의료 공공성의 중요함을 국민모두가 실감하는 사건이었다.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인 60대 남성이 확진(5월 20일)되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약 10일간 4개 병원을 경유했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전형적인 의료기관 쇼핑 현상이다.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최초 진료를 신뢰할 만한 주치의로부터 받지 못한 결과이다. 예방적 서비스 및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돌봄 주치의사업을 통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온 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을 근간으로 해야 가능하다.

▣ 중점과제

1. 노인 주치의 사업
2. 장애인 주치의 사업
3. 장애인 통합재활센터 운영

## ■ 과제별 해설

### 1. 노인 주치의 사업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현상 지속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하고 있음. 노인 만성질환자는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현재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가 2,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이 절실히 필요함.
-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1차 의료 강화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으로 주치의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치의 도입방향은 일부 특정주민(70대이상 노인)에 대해 적용하되,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출발기초로 1단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70대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3단계 서비스대상의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주치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불보상은 인두제를 기본으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사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치의 협력의원간의 네트워크 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2. 장애인 주치의 사업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 계층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의료비는 높는데 소득이 낮으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견줘 건강 및 기능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관리 제도 장치가 없음.
- 장애인 주치의제를 도입해 1차 진료는 주치의, 2차 진료는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광역재활원, 3차 진료는 국립재활원이 담당하는 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시급함. 장

애인 주치의사업도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주치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센티브(중장기적으론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장애인 의료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료발전기금' 재정 등이 필요함.

### 3. 장애인 통합재활센터 운영

- 장애인이 치료를 마치고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활치료가 일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재활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환자들은 보통 국립재활원등 재활원에서 재활 훈련을 받음. 그러나 3개월 이상 입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3개월 후에는 퇴원을 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됨.
- 퇴원 이후 어떤 곳에서도 이들의 재활에 대해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는 곳이 없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다시 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지역사회통합재활센터에서 재활원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집에서 운동하거나 통합재활센터에 나와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질환별 자조모임 운영이나 생활처방(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의사 및 간호사와 연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사와 지역의 의료인들 연계망 구축, 방문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재활센터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5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돌봄

사람은 태어나면서 나이먹기까지 출산시의 돌봄, 영유아기의 돌봄, 노년기의 돌봄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현대에 들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단독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돌봄을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가 책임 지도록 만들고 있다.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종사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의 핵심요건이다. 하지만 현재 돌봄은 거의 시장에 내맡겨져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시장화와 이윤 추구는 종사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온존시키며, 서비스 질 제고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종사자와 수요자 양쪽의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종사자와 수요자를 비롯해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돌봄이 인권과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대안이다.

■ 중점과제

1. 우리 동네에서 노년을 맞이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확충
  - ①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②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③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위탁
  
2.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
  - ① 가사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 훈련 지원
  - ② 한부모가정 돌봄서비스, 산후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돌봄협동조합 우선 위탁
  
3. 기초지자체별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돌봄센터 설치
  - ①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 ② 지역주민과 종사자, 기관들에게 정보 및 상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돌봄센터 설치

## ■ 과제별 해설

### 1. 우리 동네에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확충

#### ○ 현황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3%를 넘어섰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질병노인 뿐 아니라 허약노인도 급증하고 있음.
- 경증질환`허약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어 질병`장애 발생시 병원→가정→요양(병)원의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노인의료비를 급증시키고 수발에 따른 가족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본인들도 기능을 온존`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2014년 말 현재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16,543개 가운데 지방단체의 비율은 기관 수의 0.1%, 정원의 0.5%에 불과하고, 개인·법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노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등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 ‘aging in place’ ‘healthy ageing’, 곧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가능한 한 자립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는 이윤 추구가 중심이 아닌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함.

#### ○ 세부 과제

- ①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②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③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위탁

### 2.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

#### ○ 현황

- 맞벌이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 등 가정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전달체계가 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고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 종사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제안하고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정내 돌봄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



○ 세부 과제

- ① 가사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지원
- ② 한부모가정 돌봄서비스, 산후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돌봄협동조합 우선 위탁

3. 기초지자체별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돌봄센터 설치

○ 현황

- 돌봄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세대에서 필요한 서비스이며, 지역사회를 테두리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서비스임.
- 하지만 현재 계획과 관리가 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임. 또 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나 고충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정기적인 돌봄 수요공급 조사와 돌봄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과 종사자를 상담, 교육하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세부과제

- ①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 ② 지역주민과 종사자, 기관들에게 정보 및 상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돌봄센터 설치



6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

지금 세계 곳곳은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량위기는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에너지와 핵 발전에 의한 에너지는 더 이상 값이 싸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 탐욕을 정당화하는 경제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경제,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후세대와 공유하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발현될 잠재력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15년 UN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할 지속가능발전목표(CDGs)를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협동조합 연맹 역시 2016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 주제로 “2030년을 향한 협동조합 :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파트너십”를 채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가기로 했다.

날로 낮아지는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농촌의 몰락,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점과제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 ① 시민 주도형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목표 수립
  - ②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가능한 유희공간의 장기 임대
  - ③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의 보장
  - ④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2.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 ①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정비

② 농업협동조합의 민주화(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및 경제사업 강화

3.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①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②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 국내산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③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교류활동 활성화

■ 과제별 해설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 현황

- 현재 전국 곳곳에 시민 주도형 에너지 생산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2015년 약 3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상업적 발전회사도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설비 자금의 조달과 필요한 토지, 공간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반대로 상업적 발전회사의 경우 정부 지원금 등에 의존하고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들 지역에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소비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차원의 정책목표 수립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장기임대 정책, 발전단가의 안정적 보장 등의 정책이 필요함.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에도 힘써야 함.

○ 세부 과제

- ① 시민 주도형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목표 수립
- ②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
- ③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의 보장
- ④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2.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 ○ 현황

- 현재 국내 식량 자급률은 23%에 불과함. 개방농정이 가속되면서 농촌의 활력은 떨어지고 농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음. 결국 식량, 먹거리의 생산-소비를 대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은 매우 고령화되어 농촌과 농업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실정임. 농협 역시 노령화된 조합원에 의한 통제와 민주적 경영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젊은 농민이 농업을 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함. 그 방안으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주어지고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 분야 협동조합에도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협동조합의 유형을 추가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농림어업분야 경영체 설립을 촉진해야 함.
- 기존 농협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임.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우선 개혁함으로써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신용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제사업을 강화해야 함.

### ○ 세부 과제

- ①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정비
- ② 농업협동조합의 민주화(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및 경제사업 강화

## 3.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 ○ 현황

- 현재 한국 생협은 조합원 100만 가구, 사업규모 1조원의 규모로 성장했음. 개방의 파고가 한층 더 높아지고 농촌,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촌,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소비자 조직의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곧 소비생활의 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소비기반의 안정적인 확보는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을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성화의 단계에 접어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 함께 도-농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과제

- ①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②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 국내산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 ③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교류활동 활성화

7

다시 살아나는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이윤을 추구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력이 없어진 구도심이나, 사람들이 적은 농산어촌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시장의 매력이 없어진 지역일수록 시장의 실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 농어촌에 희망이 생긴다.

구도심재개발을 하드웨어투자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임대주택 및 공공자산을 만들어 청년창업과 연결시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없앤다면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 모여들 것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지역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필요하다.

▣ 중점과제

1.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 ①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② 지역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기업인증제도 도입
2.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
  - ①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의 원스톱 플랫폼 마련
  - ② 자산 이동 및 농어촌 기반 확보를 위한 후견조직 역할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
  - ① 표준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유자산 확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도입
  - ②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유건물 도입 및 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 ▣ 과제별 해설

### 1.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인증기업 활성화

#### ○ 현황

- 사회적경제조직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생산조직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지역경제력의 절대적 불평등도는 1985년 52만원에서 2010년 1004만원으로 15년만에 20배 늘어나고 있으며(통계청), 특히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더구나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48년까지 인구 5만 이하의 한계상황에 놓이는 기초지자체는 82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보건사회연구원 2015) 낙후지역의 활성화 정책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 따라서 영국의 CIC를 참고하여 낙후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복지 측면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20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뤄져야 함

#### ○ 세부 과제

- ①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최소 1군1개소, 혹은 3~4개 읍면을 포괄하는 생활권 1개소 설립
  - 초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력체계 정비 제도지원
  -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의 장기대출 제도 정비
- ② 지역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기업인증제도 도입
  - 농산어촌 마을기업의 발전방향 제시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사회적경제 연계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6차산업 지원정책을 사회적경제와 연계
  - 지역기업인증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 마케팅 등의 지원

### 2.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

#### ○ 현황

- 도시일자리 절벽, 주거비 증가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귀농가구는 2014년 11,144가구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가구도 33,442가구로 전년에 비해 55% 증가하였음
- 하지만 농촌 부적응, 농업경영실패, 소득 부족 등으로 도시로 돌아오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금융지원이 중심이므로,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귀농귀촌의 활성화가 어려움. 각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민간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가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20대 국회는 노력해야 함.

○ 세부 과제

①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의 원스톱 플랫폼 마련

- 귀농귀촌 희망자 발굴 및 통합교육, 정착을 도시-농어촌 지자체가 함께 운영
- 도시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관리, 농촌지역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산된 농산물의 로컬푸드, 직거래 조직과 연계

② 자산 이동 및 농어촌 기반 확보를 위한 후견조직 역할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 도시지역 유희자산의 임대협동조합 운영
- 농지구입 등 농어촌지역의 단계적 자산 확보를 위한 농민협동조합 농지취득 및 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 마련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주거환경개선

○ 현황

- 도시지역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구도심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하지만 그동안의 구도심 대책은 재개발 등 토건사업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어 원주민 퇴출 문제 발생
- 예술인, 상인 등의 노력으로 상권활성화가 되어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으로 다시 퇴락을 반복하는 문제점 발생(신촌, 이대, 홍대입구, 문래동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예산으로 이미지 개선에 주로 투입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높지 못했던 문제 발생

○ 세부과제

① 표준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유자산 확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도입

- 주요 거점 건물을 지정하고, 공공자산으로 매입하여 장기임대 추진
- 사회적경제기금과 부동산 투자신탁을 활용하여 거점건물의 공동 구입 지원
- 거점 건물의 임대료를 중심으로 상하한선 결정하도록 조례 제정을 의무화
- 거점 공유자산 건물의 임대료를 시장척도(yard stick)로 활용

②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공유건물 도입 및 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유건물 정책을 확대

- 주거환경 개선시 희망주민에 대해 통합 건축, 건축비 지원
- 지원된 건축비에 해당하는 면적은 임대주택협동조합으로 운영, 기존 주민에 한해 매매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권 보장

